
 국토교통부		<h1>보도자료</h1>		<small>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배포일시	2019. 10. 9(수) 총 6매(본문3, 참고3)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과장 박병석, 사무관 천지민, 주무관 최상림 ·☎ (044) 201-3898, 4576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통행료관리팀		·팀장 장한별, 전문분석원 전은수 ·☎ (044) 211-3128, 3296	
보도일시		2019년 10월 1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9.(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승 미납차량, 전자예금압류 유의하세요!

- 10일 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통합 조회·납부시스템 구축
- 올해 연말까지 차량 최대 1,400여 대 대상 강제징수 시범 실시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10월 1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km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km 대비 16.1%를 차지한다.
 -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조회 또는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 이하 '민자도로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민자도로센터 홈페이지 내 조회 페이지 구축('19.말), 통합 조회 및 납부 시스템 구축('20.~)

□ 한편, 동 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12년 88.2%에서 '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 미납통행료 회수율 '12년 94.3% → '18년 92.3%

○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16~'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하여 많게는 약 1천 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하여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되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 단계로 이루어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 올해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의 도로전광표지(VMS)와 통행료 미납자에게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에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및 시범사업 시행사실을 표시하여 미납통행료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민자도로센터 내 콜센터(044-211-3377)를 운영하여 강제징수 대상자의 미납통행료 납부, 전자예금압류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도로국 김용석 국장은 “지난 해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며,

-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천지민 사무관(☎044-201-3898),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통행료관리팀 장한별 팀장(☎044-211-31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

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률(미납발생률)

(단위: 억 원)

연번	구분	2012			2015			2018		
		총수입 금액	미납발생 금액	미납률	총수입 금액	미납발생 금액	미납률	총수입 금액	미납발생 금액	미납률
< 재정고속도로 합계 >		32,298	141	0.44%	36,725	262	0.71%	40,021	466	1.16%
< 민자고속도로 합계 >		7,895	60.37	0.76%	10,348	116.79	1.13%	14,692	259.13	1.76%

②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회수율(미납금액 중 회수하는 비율)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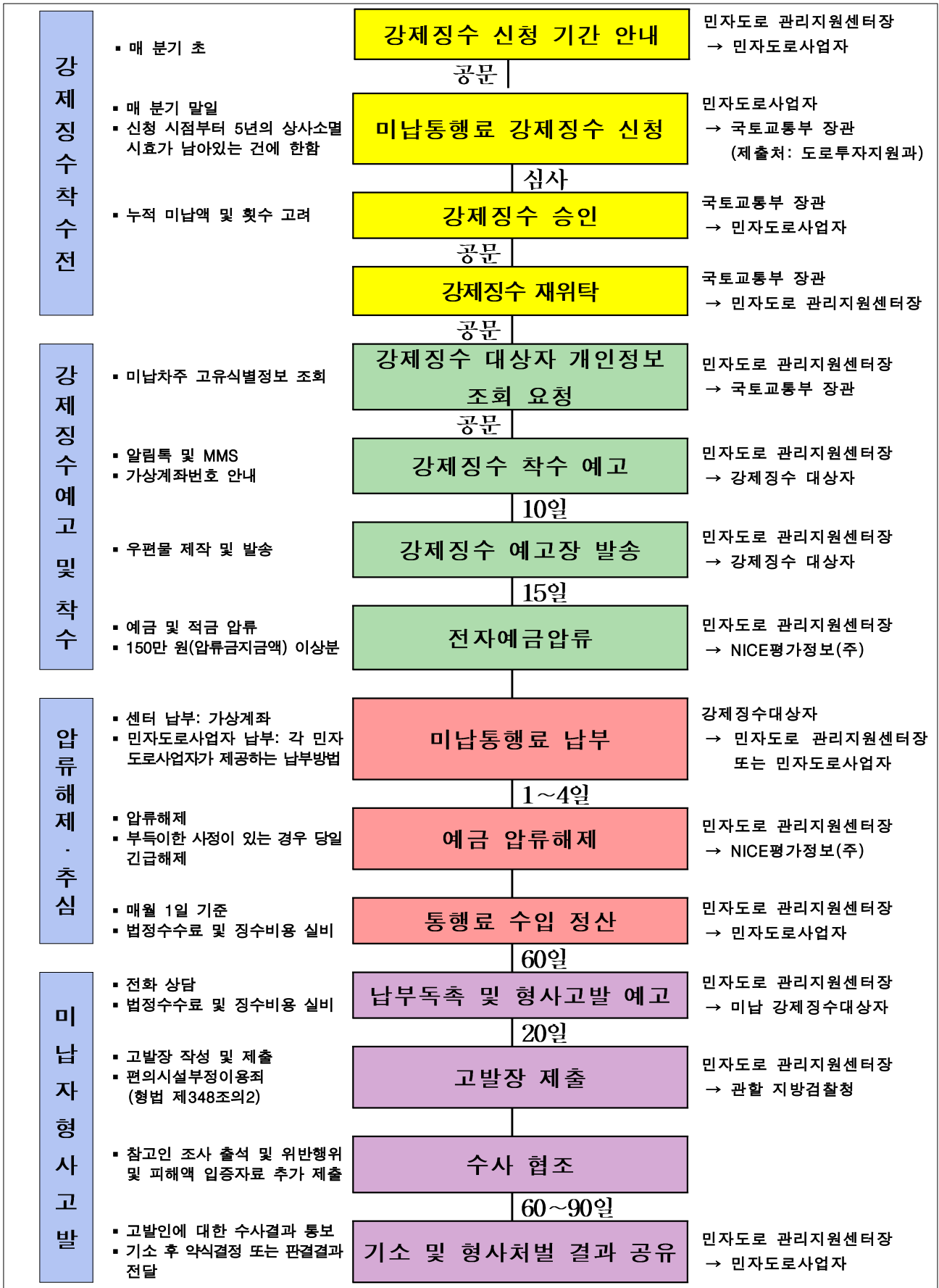
연번	구분	2012			2015			2018		
		미납발생 금액	미납회수 금액	회수율	미납발생 금액	미납회수 금액	회수율	미납발생 금액	미납회수 금액	회수율
< 재정고속도로 합계 >		141	133	94.33%	262	245	93.51%	466	430	92.27%
< 민자고속도로 합계 >		60.37	53.24	88.19%	116.79	97.2	83.23%	259.13	201.38	77.71%

③ 민자고속도로 상습 미납 현황('16~'18년 중 발생 & 현재까지 미회수건 기준)

구간	구분	해당 차량 대수(대)	미납 금액(원)		
			미납액(원)	부가통행료	계
전체	20회 미만	2,799,951	8,044,933,956	4,376,687,060	12,297,317,091
	20회 이상 50회 미만	14,720	909,283,790	544,864,950	1,423,962,457
	50회 이상 100회 미만	3,330	480,419,270	285,719,100	746,265,605
	100회 이상 200회 미만	1,022	320,481,469	163,479,700	473,073,176
	200회 이상	362	317,005,430	71,017,900	380,029,332
	합계		2,819,385	10,072,123,915	5,441,768,710

참고 2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강제징수 절차



참고 3

VMS 및 고지서를 통한 시행예고

① VMS 안내 : `19. 9. 30. ~

- 1줄 당 10자 내외, 가독성을 위해 핵심 단어만 사용

(예시)

**통행료 상승 미남 시
예금 압류 및 형사고발**

**19년 10월부터
상습미남통행료 강제징수**

(도로공사 사례)



② 미남통행료 고지서 안내 : `19. 9. 30. ~

(도로공사 사례)

ex 한국도로공사
www.ex.co.kr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77
콜센터 : 1588-2504(연중무휴)

통행료서비스 앱
이남통행료 조회·납부
통행료 사용내역 확인
설치 방법
【통행료서비스】 앱 검색
1. 구글 [Play 스토어]
2. 애플 [App Store]

전국 편의점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납부가능
GS25, 7-Eleven, CU, etc.
*현금, 현금카드 납부가능
*우리, 신한은행 외 현금카드 이용시
타행이체 수수료 고객부담
[편의점 수납용 바코드]
Barcode for convenience stores
바코드를 편의점에서 물건 구입시
사용하는 스키너로 읽혀주세요.

【유요사항】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통행료 강제징수)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방 및 예금 압류가 진행되며, 합법 제
348조의 조판사실 부당이함에 근거하
여 제정환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e그린우편

1700719458770 [집수역: 대구수역]
경1725 01 21
대구시립 김산 경상북도

보통등기

홍길동 귀하
38638

01가0000 유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촉탁장(압류예고) (PAGE: 1-1)

번호 NO.	통행 일시 Pass Date & Time	통행 장소 Route	진출영업소 연락처 TG Contact Number	발생원인 Reason for Incurrence 입주할보이상	통행료 Toll Due 7,000	부가통행료 Additional Toll	합 계 Total Amount 7,000
1							
2							
3							
4							
5							
6							
7							
8							
9							
10							

납부할 금액 Total Amount 7,000

안내문/고지서 2회 고지에도 불구하고 미납통행료가 납부되지 않아 독촉장(압류예고)을 발송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발송일-15일) 경과 시 부가통행료 10배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강제징수(지방 및 예금압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독촉장 수령 전 다른 방법으로 납부했을 경우 진출영업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OCR 지로영수증
지로영수증
103189호

지로통지서 (국유기관용)